

[일련번호 : 1]

양 천 구 주 의 요 구

제 목 신규(변경) 설치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대한 고시 미실시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과는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의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」 제6조(계기의 사용), 제7조(계기의 관리)에 따라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, 관리책임자는 계기의 신규설치 및 교체 시에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과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신규 및 변경 구매하면서 이

에 대한 고시를 시행하지 않았다.

[표]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고시 현황

연번	구분	설치위치	설치일	설치대수	고시여부
1	신규	신목신협 목동사거리점	2022.11.	1대	미시행
2		등촌신협 본점	2023.5.	1대	"
3		메디힐 병원	2023.5.	1대	"
4	변경	목동역	2023.10.	1대	"
5		오목교역	2023.10.	1대	"
6		출입국관리사무소	2023.12.	1대	"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과는 전국 시군구 및 관련기관에 신목신협 목동사거리점, 등촌신협본점, 메디힐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안내 및 정부24 홈페이지 게재 요청을 시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례에서 정한 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